

행 정 자 치 부

시 정 요 구

제 목 육아휴직수당 지급 부적정

기 관 명 강원도

관 계 기 관 강원도 본청, 양구군, 영월군, 인제군

내 용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2에 따르면 육아휴직수당은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월봉급액의 4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을 휴직일부터 최초 1년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강원도 본청과 3개 시·군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최초 휴직한 날부터 휴직기간을 기준으로 1년 이내의 기간 동안에만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육아휴직수당 지급업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자녀에 대하여 1년을 초과하여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하는 등 총 16,507,410원의 육아휴직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하였다.

또한 강원도 본청과 3개 시·군에서는 육아휴직 공무원의 수당지급을 위한 휴직기간 산정 시 착오 등으로 인하여 총 4,711,370원의 육아휴직수당을 해당 공무원에게 미지급하였다.

조치할 사항 강원도지사, 양구군수, 영월군수, 인제군수는

육아휴직수당 지급기간을 초과하여 지급된 육아휴직수당 16,507,410원([확인서]에 따른 기관별 해당액)을 회수하여 세입조치 하시고, 미지급된 육아휴직수당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육아휴직수당 지급기간 산정을 철저히 하여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